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07 호】

2014년 09월 12일 (금)

선 람	기 관 의 장

회 랑							
-----	--	--	--	--	--	--	--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4-47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4-261호 도로명주소 고시 19

고양시 고시 제2014-262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22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신설 및 연장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정비

3. 주요골자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가 허가 규정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추가
(안 제22조)
- 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하는 경우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3일로 조정
(안 제23조제1항 별표 3)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의 개정 사항 반영

임신 공무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을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임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다태아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에 기여 (안 제23조제2항)

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 (안 제23조제4항)

마. 자녀가 군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23조제14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0월 2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600번지)

○ 전 화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31-8075-237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를 “고양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소속기관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명”을 “결과를 보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본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본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로, “법령에 의한”을 “법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 대해서는”으로, “가산한다”를 “더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언지”를 “사용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 대해서는”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공무원의 국외여행,”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을 “연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일수는 이를”을 “일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연도”와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계산하되”를 “계산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병가일수는 이를”을 “병가일수는”으로,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을 “있는 병가일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제3항 중 “첨부”를 “제출”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의”를 “또는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 기준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단서 내용으로 “다만, 부부공무원은 1명에 한하여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3조제13항과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공무원 자녀가 군입영이 확정되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행정지원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화
	팀 성 장 명	행정지원팀장 강 병 의
	담 당 자 성명·전화	황영기 (8075-2373)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고양시지방공무원</u>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복무선서)</p> <p>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p> <p>③ (생략)</p> <p>제8조 (출장공무원)</p> <p>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생략)</p> <p>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u>복명</u>하여야 한다.</p> <p>제9조 (겸임근무)</p> <p>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u>소속기관의 장</u>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u>소속기관의 장</u>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u>고양시 지방공무원</u></p> <p>제2조 (복무선서)</p> <p>① <u>고양시 지방공무원</u>(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따라..... <u>고양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p> <p>② 따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 (출장공무원)</p> <p>① 해당</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결과를 보고.....</p> <p>제9조 (겸임근무)</p> <p>①에 따라 공무원은 본직기관의 장</p> <p>②<u>공무원이</u> 해당..... <u>본직기관의 장</u>.....</p>

현행	개정안
<p>제10조 (파견근무)</p> <p>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 (복장등) ① (생략)</p> <p>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p> <p>제18조 (연가일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p>제10조 (파견근무)</p> <p>①에 따라 공무원은</p> <p>② 공무원이 해당</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 (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안전행정부령).....</p> <p>제18조 (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법령에 따른</p> <p>③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하지 2.에 따른 남은

현행	개정안
<p>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p> <p>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u>공무외의 국외여행</u>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u>연가원의 제출</u>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p> <p>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 <u>범위안</u>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u>같은</u>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u>잔여</u>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u>범위안</u>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p> <p>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u>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p>	<p>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공무원에 대해서는</u> <u>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연가신청</u>..... </p> <p>⑤<u>에 따른</u> <u>해당</u> <u>범위</u></p> <p>⑥ <u>해당</u> <u>남은</u> <u>범위</u> <u>해당</u></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p> <p>① <u>일수는</u></p>

현행	개정안
<p>제22조 (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생략)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생략) <p><신설></p> <p>제23조 (특별휴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p>제22조 (공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밖의 따른 2. (현행과 같음) 3.에 따라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6.에 따른 7. 또는 그 밖의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p>제23조 (특별휴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에 따른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 다만 부부공무원은 1명에 한하여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u>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u>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⑥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u>범위안</u>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u>1회에 한하여</u>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⑦ ~ ⑫ (생략)</p> <p><u><신 설></u></p>	<p>⑤ 「<u>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u>」.....</p> <p>.....</p> <p>.....</p> <p>⑥ <u>범위</u>.....</p> <p>..... <u>한 차례에 한정하여</u></p> <p>.....</p> <p>⑦ ~ ⑫ (현행과 같음)</p> <p>⑬ 공무원 자녀가 군입영이 확정되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신 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u>1</u>
출산	배우자	5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2</u>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u>3</u>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u>3</u>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 [전문개정 2010.7.15]

제7조의3(특별휴가)

-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3.12.1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3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
 를 가산할 수 있다.

고양시 고시 제2014 - 261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12.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132-9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7-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2-9	20140912	20090710	고양시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378-64	20140912	20090911	군부대 인근의 도로로 화랑의 높은 기개를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56-2, 34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53	20140912	20100126	옛 포구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2길 114	20140912	20110715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7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283	20140912	20120329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0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06	20140912	20120601	옛 지명인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 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03-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5-6	20140912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 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38-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1길 48	20140912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 16	20140912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 여 도로명 부여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5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4	20140912	20120601	삼송동과 원흥동에서 한자씩을 활 용하여 도로명 부여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03-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2길 5-12	20140912	20120601	옛 지명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 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4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안길 38	20140912	20131022	삼송동과 원흥동의 한자씩을 도로 명에 활용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30-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3로 22-1	20140912	20131108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96-2, 596-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819번길 30	20140912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8190m에 위치한 도로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1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360-51	20140912	20100126	건달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1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탈산로 360-47	20140912	20100126	건탈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38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로 33-10	20140912	20111202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3-8, 3-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당로 514	2014091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 월 12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486 외2건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8075-3096 ~ 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363-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362-1, 1362-6, 1362-7, 1362-8, 1363-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86	2014-09-12	관련지번변경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96-53 외 129필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2014-09-12	관련지번변경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8-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08-1, 2308-1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58	2014-09-12	관련지번변경	